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제주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,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(7급 12명)을 증원하고,

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(7급 12명)과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4248호)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(7급 4명) 및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34597호)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(7급 4명)에 대해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12. ~ 5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(제2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8조(평가대상 정원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689”를 각각 “701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73”을 “685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4]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(제28조제1항 관련)

1. 기상청 소속기관

평가대상 정원

조직	정원
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업무(지방기상청)	20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 <u>제28조(평가대상 정원) ① 「행정</u> <u>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</u> <u>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상</u> <u>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</u> <u>표 4와 같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</u> <u>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3]

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	정	안	증	감
총계	.		.		.				
			<u>689</u>		<u>701</u>			+12	
일반직 계			<u>689</u>		<u>701</u>			+12	
	.		.		.				
	.		.		.				
3급 또는 4급 이하			<u>673</u>		<u>685</u>			+12	
	.		.		.				
	.		.		.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0